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제 2 조(과세면제)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"다음 각호의"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(재산할)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면제한다. 다만,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 및 고급요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

제 3 조(면제신청)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.

제 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